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 - 23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3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구청사 12층 강당이 하늘도서관으로 조성됨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에서 12층 강당을 삭제하고 사용료 부과기준 등의 용어를 정비하여 청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중 '구청사 12층 강당' 삭제(안 제3조제1항제4호)
- 나. 시설물의 용도에서 12층 강당의 용도였던 결혼식장 삭제(안 제3조제2항)
- 다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3. 주요 토의과제

“없음”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(사용료),
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4. 2. 3. ~ 2. 23.(제출의견 :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원안동의
- 3)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제외법령
- 4) 2014년 제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의결 (2014.3.6.)
- 5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이용자”를 “사용자”로, “제3조에서 규정하는”을 “제3조제1항 각 호의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상 시설물”을 “시설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등으로, 구청사 12층 강당은 결혼식장”을 “등”으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조의 시설물을 사용허가”를 “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”로, “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”를 “호와 같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마포구민”을 “주민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경우”를 “자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사용허가신청 및 허가)”를 “(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사용허가신청”을 “사용허가 신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사유로 인하여”를 “사유로”로 한다.

제7조제1호 중 “조례에 의한 규칙”을 “조례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설비”를 “사용자의 설비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시설물을 사용허가 하는”을 “구청장은 시설물을 사용허가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「초·중등 교육법」”을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”으로, “50%”를 “50퍼센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50%”를 “5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50%”를 “50퍼센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10조제2항제4호 중 “50%”를 “50퍼센트”로 한다.

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”를 “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휴대한 자”를 “휴대한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경우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(제9조제2항 관련)

구분	사용료	내용	비고
구청사 1층 · 지하 1층 로비	무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평일 9:00~18:00 이용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1회 이용시간 초과 사용 시 시간 단위 별 일할 계산 (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) 2.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함 3. 사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4.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 주차료 징수 5.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
2층 대강당	300,000원/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1회 이용시간은 4시간 이내 ▫ 평일 9:00~21:00 이용 ▫ 토요일·공휴일 9:00~18:00 이용 	
구청사 4층 시청각실	100,000원/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냉·난방 가동 시 사용료에 냉·난방비 가산 	
냉·난방비	20,000원/시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냉·난방 적용기간 - 냉방 : 6월 ~ 9월 - 난방 : 12월 ~ 2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기온고려 냉·난방가동 시간 변동
	10,000원/시간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시설물”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(마포구의회, 마포구 보건소를 포함한다. 이하 “구청사”라 한다)의 행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<u>이용자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청사 내 시설물 중 제3조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</u>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제3조(사용허가 대상 시설물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<u>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구청사 12층 강당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시설물 중 구청사 1층·지하 1층 로비는 문화행사, 전시회 등으로, <u>구청사 12층 강당은 결혼식장의 용도로만 사용</u>하되 사용료는 전액 무료로 한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용자</u> ----- ----- 제3조제1항 각 호의 -----.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사용허가 대상 시설물) ① ----- ----- <u>시설물</u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등</u>----- -----.</p>

다.

제4조(사용허가 신청자) 제3조의 시설물을 사용허가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.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마포구민
2. (생략)
3.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5조(사용허가신청 및 허가)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 중 구청장에게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6조(사용허가 제외 대상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1.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
제4조(사용허가 신청자)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----- 호와 같다.

1. ----- 주
----- 민
2. (현행과 같음)
3. ----- 자

제5조(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) ① -----

----- 사용허가 신청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사용허가 제외 대상) -----

-----.

1. ----- 사유로 -----

2. ~ 6. (생략)

제7조(사용허가의 취소·정지 등) 구청장은 사용허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
1.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 한 규칙 등 관련 규정과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

2.·3. (생략)

제8조(시설물 설비 등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9조(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) ① 시설물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「초·중등 교육법」에서 정

2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사용허가의 취소·정지 등) -----

1. ----- 조례 시행규칙-----

2.·3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시설물 설비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사용자의 설비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) ① 구청장은 시설물을 사용허가하는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「초·중등 교육법」-----

하는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서 정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0% 감면

3. 장애인·보훈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50% 감면

4. 문화예술 관련 자선공연 행사의 경우 50% 감면

② 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과 사용시간 등은 별표와 같다.

제10조(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)

① (생략)

②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50% 반환

5. (생략)

제13조(입장 및 행위제한) 구청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
----- 50퍼

센트 --

3. -----
----- 50퍼센
트 --

4. -----
----- 50퍼센트 --

② 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10조(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
----- 50퍼센트 --

5.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입장 및 행위제한) -----

-----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
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
게 입장을 제한하게 하거나 퇴
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.

1. (생 략)
2.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
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3.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및
시설물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
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[별표]

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 부과기준
(제9조제2항 관련)

구 분	사용료	내 용	비 고
구청사 1층· 지하1층 로비	(생 략)	▫ 평일 09:00~21:00 까지 이용	1. (생략) 2. 토·일 요 일
2층 대강당	(생 략)	▫ 1회 이용시간은 4시간 이내 ▫ 평일 09:00~21:00 까지 이용 ▫ 토,일요일	및 공 휴일은 이용료 의
구청사 4층 시청각실	(생 략)	09:00~18:00까지 이용 ▫ 공휴일 09:00~18:00 까지 이용 ※ 냉·난방 가동 시 사용료에 가산	30%를 가산함 3. 사전 행 사준비 를 위한
구청사 12층 강당	무료	▫ 1회 이용시간은 4시간 이내 ▫ 토, 일 요 일 09:00~18:00까지 이용 ▫ 공휴일 10:00~18:00 까지 이용 ※ 냉·난방비 사 용료 없음	사용은 사용료 의 50% 로 함 4~5 (생 략)

하는 사람들의-----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----- 휴대한 사람
3. -----
----- 사람

[별표]

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
(제9조제2항 관련)

구 분	사용료	내 용	비 고
구청사 1층·지 하1층 로비	(현행과 같음)	▫ 평일 9:00~21:00 이용	1. (생략) 2. 토요일 및 공휴 일은 사 용료의
2층 대강당	(현행과 같음)	▫ 1회 이용시간 은 4시간 이내 ▫ 평일 9:00~ 21:00 이용 ▫ 토요일·공휴 일 9:00~18:00 이용 ※ 냉·난방 가 동 시 사용료에 냉·난방비 가산	30퍼센트 를 가산 함 3. 사전 행 사준비를 위한 사 용은 사 용료의
구청사 4층 시청각실	(현행과 같음)		50퍼센트 로 함 4.~5. (현 행과 같 음)
<삭 제>			